

축구부 운영 관리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관광대학에서 육성하는 축구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축구부 운영 관리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제) 대학은 학과장 아래 축구부장을 두며 그 직무와 감독의 임무는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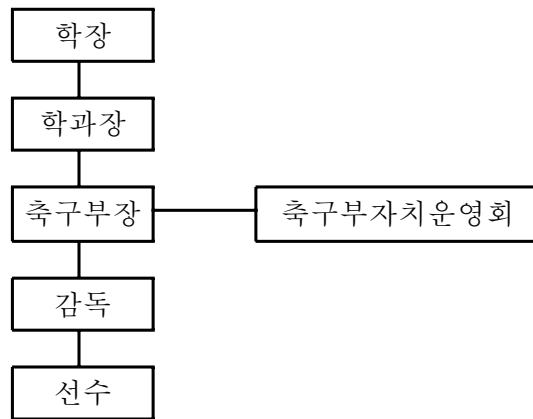
1. 축구부장의 직무

- 1) 대학 축구부의 관리, 감독자로서 원활한 운영과 성적향상에 힘쓴다.
- 2) 감독과 선수 및 축구부 자치운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도, 감독한다.

2. 감독의 임무

- 1) 감독은 축구부의 지도자로서 선수의 축구능력배양과 성적향상에 책임을 다한다.
- 2) 감독은 축구부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 개개인에게 공평한 지도를 한다.

3. 조 직



제 3 조 (축구부의 운영 목적)

- ① 학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② 대학축구를 활성화하고 한국 및 지역축구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③ 일정선수를 매년 선발함으로써 신입생 충원에 이바지한다.
- ④ 각종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본 대학의 대외 홍보활동에 이바지한다.

제 4 조 (축구부 운영방안)

① 감독임용

1. 대학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1년 계약직으로 보수는 능력에 따라 매월 150에서 200만원 내에서 정한다.
2. 감독은 대학의 학칙과 축구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축구부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② 선수 선발 방법

1. 운동부 특기자로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2. 선발일시는 당해 연도 9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로 한다.
3. 협회 추천 및 공개테스트, 감독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4. 전국대회 16강 입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5. 총인원은 40명 이하로 한다.
6. 신입생은 입학시 본 대학의 학칙 및 축구부운영규정과 축구부 운영 시행규칙을 준수하는 각서(선수)와 서약서(학부모)를 제출한다.(별첨1, 2)

③ 대학의 지원 등

1. 매 학년도 초 협회 등록비는 대학에서 지급한다.
2. 학기중의 숙식은 기숙사 혹은 합숙소를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
3. 신입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단, 2003년 재학생은 예외)
4. 대학은 대회성적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축구부 자치 운영회 운영

1. 축구부 자치 운영회는 축구부장의 지도와 감독의 지도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칙 및 축구부 운영 관리규정과 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축구부 자치 운영회는 감독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운영경비를 책임진다.
4. 축구부 자치 운영회의 회칙은 대학의 학칙과 축구부 운영 관리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축구부장의 허가를 득 한다. (별첨3)

⑤ 대회 출전

1. 다음과 같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전국대회 2회(토너먼트만 참가)
 - 2) 강원도 협회장기 1회
 - 3) 도민체전 1회
 - 4) 그 외 관내에서 행해지는 시합

부 칙

이 시행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서

- 학 과 :
- 학 번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강원관광대학 축구부 선수로서 학칙 및 축구부 운영관리규정과 축구부 운영 시행 규칙을 준수하고 축구부 자치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라 축구부 활동에 충실할 것이며, 자신의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아야 하는 등,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이므로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4. . .

상기인 (인)

강원관광대학장 귀하

서 약 서

< 선 수 >

- 학 과 :
- 학 번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학부모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선수와의 관계 :

1. 상기 본인은 강원관광대학 축구부원의 학부모로서 학칙 및 축구부 운영 관리규정과 축구부 운영 관리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축구부 자치 운영회 회칙에 따라 축구부 운영에 따른 제정적인 사항을 기꺼이 부담하겠습니다.

2. 아울러, 2005학년도에는 학생부족 등의 사유로 대학에서 축구부의 학생모집을 중단할 수 있을 때에도 동의합니다.

3. 선수가 학교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04. . .

학부모 (인)

강원관광대학장 귀하

강원관광대학 축구부 감독 임용 계약서

강원관광대학(이하 “갑”이라 한다)과 감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합의 한다.

1. 을의 임용기간은 1년간의 계약직으로써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중 매월 0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한다.
3. 을은 축구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강원관광대학 축구부원을 성실히 지도하며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한다.
4. 을은 축구부 관련 모든 사항(합숙, 대회출전, 전지훈련, 기타)을 축구부장의 사전 승인을 득 하여 시행하며 즉각 보고한다.
5. 을은 첨부된 선수 각서와 학부모 서약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협력한다.
6. 을은 본 대학의 축구지도자로서 학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체 금하며 위반할 경우 즉시 사임하고 제기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임용기간 중 각종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에서 2승 이상의 성적을 낸다.
8. 을은 학칙 및 축구부 운영 관리규정과 축구부 운영관리 시행규칙을 준수해야하며 대학의 정책결정을 수용한다.
9. 임용기간 중 상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1년간 재계약 할 수 있다.

강원관광대학장 0 0 0 (서명 또는 직인)

축구부 감독 0 0 0 (서명 또는 날인)

<별첨1>

평가보고서 및 소견서

- 학 과 :
- 학 년 :
- 학 번 :
- 성 명 :

항 목	배 점	1차평가	2차평가	평 균
전 적	30			
참여도	25			
공헌도	25			
능 렷	20			
합 계	100			

항 목	축구부장의 소견내용
선수의 성실성	
팀 성적	
참여도	
부모의 공헌도	
개인능력	

1차 평가자 : 감독 (인)
2차 평가자 : 축구부장 (인)
최종 확인자 : 학과장 (인)

<별첨2>

평 가 기 준 표

구 분	상	중	하
배점기준	20~30	14~19	0~13
전 적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연중 1회 이상 출전하여 준우승 이상의 성적을 올린 경우	중앙경기 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연중 1회 이상 출전하여 4강 이상의 성적을 올린 경우	중앙 경기 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연중 1회 이상 출전하여 5위 이하 성적을 올린 경우
참여도	연습시간의 90%이상 출석한 자	연습시간의80~90% 미만 출석한 자	연습시간의 80%미만 출석한 자
공헌도	축구부 자치 운영회 운영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자	축구부 자치 운영회 운영에 기여한 자	축구부 자치운영회에 별로 도움이 없는 자
능 력	입학 이후 개인 능력이 향상된 자	향상되지 않은 자	저하된 자

<별첨3>

축구부 자치 운영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회는 “강원관광대학 축구부 운영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회는 강원관광대학 축구부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이회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축구부 운영 관리규정 및 축구부 운영 관리 시행규칙을 충실하게 준수한다.
2. 축구부의 발전적 활동에 대한 모든 심의 및 예산편성과 집행을 한다.
3. 교내 . 외 활동에 적극참여하며, 이 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이회의 회원자격은 학교와 대한 축구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등록예정자로서 축구부장과 감독이 인정하는 본교 축구부원으로서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권리) 이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6 조 (의무) 이회의 회원은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학교당국과 감독 등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상실) 전 조의 수행에 역행하여 감독이 자격상실로 인정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구성)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부장 1명(학장 임명)
2. 감독 1명(학장 임명)
3. 코치가 필요한 경우 1명(학장 임명)
4. 주장 1명(선수 중 회원이 선출)
5. 주무 1명(선수 중 회원이 선출)

제 9 조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축구부장, 감독, 코치는 학장이 정한다.
2. 주장, 주무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유고시는 재선출하여 잔여기간을 수행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0 조 (확보) 이 회의 재정확보는 학교의 지원금 외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결정된 부담금은 즉시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 11 조 (관리) 이 회의 재정관리는 감독과 주무가 하고 집행내역은 전 회원 및 축구부장에게 매 월별 보고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